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7 발의연월일: 2020. 6. 22.

발 의 자:이용호·배진교·용혜인

한병도 · 김윤덕 · 김수흥

전혜숙 · 정운천 · 이상직

태영호 • 이워택 의위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정원의 3% 이상 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실업문제를 해 소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693만 명으로 1년 전보다 39만2천 명이 감소했고, 이는 실업률통계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특히 청년층 고용률은 전년대비 1.4%p 줄어든 42.2%로, 코로나19 사태로비롯한 청년일자리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렀음. 공공부문부터 청년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과 실질적인 노력이 시급함.

이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정원 대비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상향조정하고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청년고용률 제고에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5조제1항 등).

법률 제 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채용실적"을 "고용실적"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3"을 "5"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채용 실적"을 "고용 실적"으로 한다.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 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제4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 등) ① (생 략)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2
사항을 심의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3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	
자 <u>채용실적</u> 에 관한 사항	<u>고용실적</u>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공공기관의	고용 의무) ①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	
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	
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	
분의 <u>3</u>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	<u>5</u>
를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	
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	②

항제3호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평가결과 청년 미취업자 <u>채용</u>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지 방공기업에 대하여는 청년 미 취업자 고용을 확대하여 줄 것 을 요청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 개정규 저 정은 <u>2021년 12월 31일</u>까지 효 력을 가진다.

<u>고용</u>
<u>실적</u>
③ ~ ⑥ (현행과 같음)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데2조(유효기간)
<u>2023년 12월 31일</u>